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려는 것으로,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